



월간 **2026년 6월호** 2026. 6. 30.

건설법제동향

법률

- 이슈 1 : 모듈러 공법의 확산 필요와 법 제정 추진...
 목적에 고려한 합리적 입법 희망
- 이슈 2 : 계속된 건설 관련 법률과 산안법의 중복 규제...
 규제 수용성 측면 일원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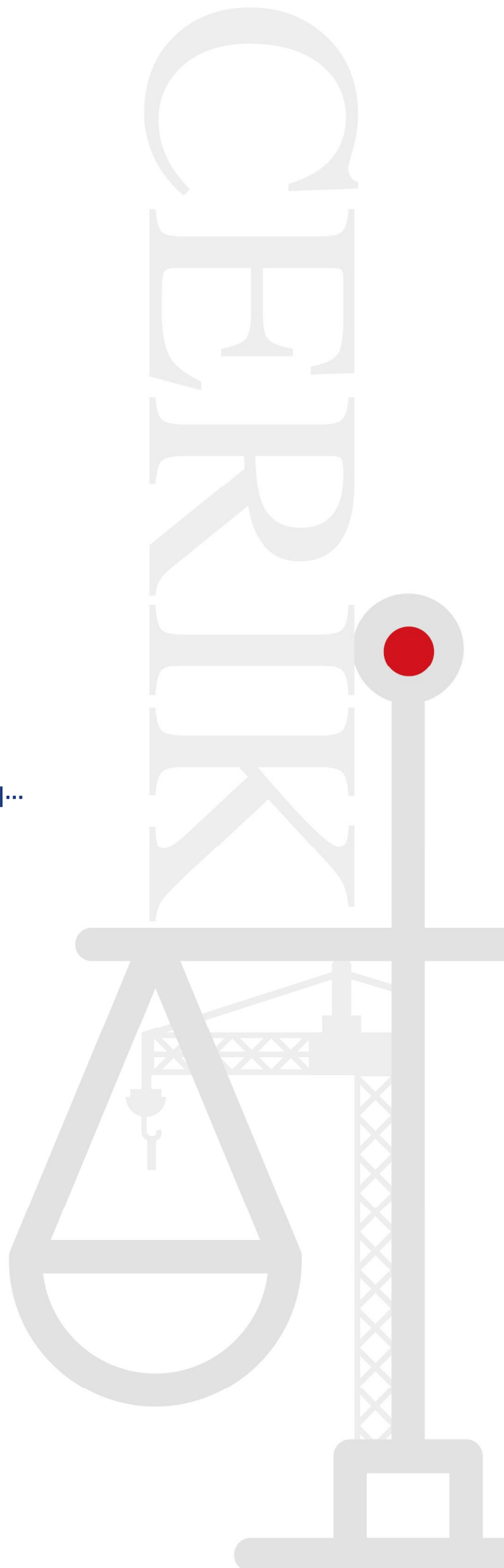
법령

- 불법하도급 제재 강화 및 신고포상 체계 확대
- 위험성평가 의무 구체화 및 재해조사 공개 강화
- 건설엔지니어링 낙찰하한율 상향 및 과잉 제재 정비
- 공공주택 입찰 담합·브로커 개입 차단
- 선금 집행관리 강화 및 지역 건설사 입찰기회 확대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

- 최근 한 달(26.5.23.~6.28.) 국회에서는 총 501건의 입법안이 신규 발의되었으며, 이는 통상 1천여 건이 발의되는 것에 비해 대폭 축소된 상황으로 이는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됨.
- 이에 건설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입법안 또한 예년 대비 적은 51건이 동 기간 입법 발의되었음.
- 이 중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법안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추가 제정된 점과 더불어 하도급 준공대금의 지급 기일을 현재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안, 종합 및 전문건설업 간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임.

이슈 1 | 모듈러 공법의 확산 필요와 법 제정 추진...목적은 고려한 합리적 입법 희망

-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모듈러 공법은 현장 중심의 전통적 시공방식에 비해 생산성·안전성·품질관리 등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을 지님.
 - 대표적으로 공사기간을 2~30%가량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주택공급 등이 가능하며, 고소(高所) 작업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기상 악화 등 현장 여건이 영향을 적게 받아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함.
 - 또한, 현장 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숙련 인력 부족, 고령화 등 우리 건설 현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작년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활성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가칭)「OSC·모듈러 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을 작년 11월 밝힘.¹⁾
 - 이 외에도 정부는 모듈러주택의 고층화·단지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수백억 원 규모의 R&D 사업을 2차례에 걸쳐 추진 중이며,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주택 발주 물량 확보를 통한 시장 마중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모듈러 공법 활성화로 주택공급 앞당긴다”, 2025.11.7.

물 공급을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임.

- 국회 또한 이에 발맞추어 작년 12월 한준호 의원 및 윤재옥 의원 공동 대표발의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안번호 제15818호)을 발의함과 더불어 이달 김종양 의원이 추가적으로 관련 제정 법안을 발의함.
 - 지난 25일 발의한 김종양 의원 법안(「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제19497호)은 대부분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나, 기존 법안과 달리 모듈러 건축 추진 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함께 도모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임.
 - 구체적으로 기존 법안은 공공공사의 경우 모듈러 건축공사의 성격·규모·사전 제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와 시공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공기단축 등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품질관리에 유리한 경우에는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율(안 제16조)하고 있으나, 후속 법안의 경우 해당 내용이 삭제됨.
 - 대신 이달 발의된 법안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인 경우 해당 공사 현장이 위치한 지역에 소재한 지역업체가 의무 공동도급으로 참여하여야 함을 규정(안 제16조)하고 있음.
 - 또한, 기존 법안에서는 의무 분리발주가 어려운 경우 또는 사전 제작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의무 분리발주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였으나(안 제28조제2항), 새로 발의된 법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됨.
- 이달 발의된 법안은 기존 법안 대비 모듈러 공법 도입의 효과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사항을 외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전술하였듯이 현재 모듈러 공법이 기존 공법에 비해 공사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도입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품질 향상과 더불어 공사기간의 단축을 꾀할 수 있기 때문임.
 - 허나, 공사기간 단축에 가장 큰 효과적 발주 방식인 기술형입찰(일괄입찰 등) 방식의 우선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적합지 않음.
 - 뿐만 아니라 기타 공사업법에 따른 의무 분리발주가 이루어진다면, 공장에서의 사전 제작률이 감소하고 현장 시공분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공장 제작을 통한 품질 향상 유도의 모듈러 공법 도입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정 업역 보호를 위해 법 목적을 왜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의무 공동도급제 적용 또한 현재 우리나라 모듈러 시장 현황을 고려할 때 부적합함. 법안에서는 공공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 현장이 위치한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모듈러 공장 및 참여 건

설·공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공동도급을 시행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나,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한 수도권에서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공공공사를 발주할 경우 해당 규정이 배제되기에 역차별이 발생함.

- 또한, 현행 일정 규모 이상 모듈러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부분의 주된 소재지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역량이 부족한 신생기업의 참여로 모듈러 공법 도입의 효과 발현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모듈러 산업 활성화 측면 해당 규제 적용은 배제함이 합당함.
- 정부의 정책 발표, 국회의 입법 사항을 고려할 때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한 합리적 법안 마련이 이루어지길 희망함.

이슈 2 | 계속된 건설 관련 법률과 산안법의 중복 규제·규제 수용성 측면 일원화 필요

- 지난 8일 박해철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30호)을 발의하였으며, 그 사유로 건설공사 발주자는 설계자·시공자 등을 선정하고 건설공사의 기간과 비용을 산정하는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체임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과 의무가 부족하기에 이를 강화해야 함을 주된 사유로 제시함.
 - 이에 법안에서는 여러 개정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핵심으로 ①설계자에게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적정 비용과 기간을 산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가설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시설물을 설계도서에 반영할 책무를 부여함(안 제67조의 3).
 - 또한, ②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변경, 공사비·공사기간 조정 등의 개선 조치 의무를 부여함.
- 허나, 해당 내용은 이미 입법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의 내용 중 일부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며, 발주자에게 기본적으로 적정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도록 한 현행법(제67조제3항)의 내용의 일부라 할 수 있음. 계속적 중복 규제 마련 이전 기존 법률안을 통한 입법 추진이 합당함.
 - 건설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적정 기간과 비용 반영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나, 자칫 개정안과 같이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비용(안전시설물, 산업안전보건비 등)만을 적정 반영할 경우 실제 건설공사와 관계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발주자의 외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려가 필요하기에 건설안전을 위한 전체 공사기간과 비용의 적정 산정과 계상을 위해 모든 사업참여자의 책무를 규율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입법 추진이 보다 합당함.

건설산업 관련 직·간접적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6.5.23~6.28)

※ **규제 또는 처벌 강화** 표기의 경우 건설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규제 및 처벌 신설·강화 입법안

법률명	주요 내용
「정보통신 공사업법」 규제·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070호(이정현 의원 등 11인)] ('26.5.2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는 심의단계와 설계단계에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한 정보통신 기술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건물공간계획 확정 전 집중구내통신실(MDF, 총통신실(TPS), 방재실 등 필수 공간이 누락 또는 부족하게 반영됨에 따라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건물의 지능화,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 - 또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집약된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홈으로 진화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2021년에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던 아파트 해킹사건과 유사한 보안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바,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설계부실로 인한 보안 취약점 발생 등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할 필요 - 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용역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소방 등 타 분야와 달리 공사의 규모와 종류별 역량과 경험 및 자격 등 설계업무 수행에 관한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실 설계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품질 및 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 - (제안방향)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통해 설계품질을 확보하여 공사의 품질 및 기술 안전성을 도모(안 제7조제2항 및 제76조제2호의2 신설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077호(임종득 의원 등 11인)] ('26.5.2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치 시공자에게 5년 이내에서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 등에게 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중 - 그런데 운영기간이 20년 이상 지난 노후한 풍력발전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노후설비 교체 비용 부담으로 노후 설비가 지속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 계속 - (제안방향)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후한 풍력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된 태양에너지·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교체하여 안전 및 발전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신설)
「산업안전 보건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101호(김주영 의원 등 11인)] ('26.6.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하청 근로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계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산업재해가 도급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원·하청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황 - (제안방향)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하청 간 협력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인이 동일 사업장에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 부여(안 제24조의2제1항)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및 안전보건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공동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안 제24조의2제2항) ▪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근로자 및 관계수급인·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안 제24조의2제3항) ▪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안 제24조의2제4항) ▪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업종과 규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안 제24조의2제5항)
<p>「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104호(황정아 의원 등 10인)] ('26.6.5.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재 전 세계 AI 패러다임은 가상 세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술력, 탄탄한 제조업 가치사슬, 그리고 고도화된 AI 역량이라는 3대 핵심 역량을 모두 보유한 국가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고도화된 융합이 요구되는 피지컬 AI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독보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 현행 법체계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일반적 규정과 로봇·자율주행·드론 등 각 산업별 개별법으로 분절되어 있어,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 특유의 복합적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한계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인간의 혁신적인 기술이 실제 물리 공간에 적용되기 위해 필수적인 시범지역 운영, 전용 학습 데이터 구축, 고도화된 성능인증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관통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기술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 - (제안방향) 피지컬 AI 개발을 위한 통합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시범지역 지정·운영, 학습 데이터 구축, 성능인증 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의 법적 근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피지컬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안 제1조) ▪ “피지컬 인공지능”이란 물리적 환경을 인식·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행위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말하며, 그 밖에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 피지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시범지역, 피지컬 인공지능 사업자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피지컬 인공지능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계획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위원회를 두고, 정부가 피지컬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의 제도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며, 피지컬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시범지역의 운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 및 제12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하여 안전성 등 성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기준 부적합 등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지역에서 피지컬 인공지능을 운영하려는 자가 규제 적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지컬 인공지능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규제 특례,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일부 법률의 적용을 배제·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 (피지컬 AI 신속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및 간주제도 도입) 피지컬 AI 관련 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규제특례 신청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특히 기간 내 거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규제 특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도입하고, 유효기간을 5년(현행 ICT 특례는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규제 특례 지정을 위한 관계 기관의 검토 회신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보완 시 최대 30일)로 대폭 단축하여 행정 절차의 신속성 확보(안 제18조) ▪ (다부처 규제 특례 일괄 신청 제도(원스톱 서비스) 신설) 사업자가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모빌리티혁신법」 등 여러 법령에 얽힌 규제 특례를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 특례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창구'의 법적 근거 마련 ▪ 피지컬 인공지능의 연구·운영 등의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익명 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영상·음성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안 제20조 및 제21조) ▪ 시범지역에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 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지역에서 피지컬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시범운영을 하는 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며, 정부가 그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 및 제23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피지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구축 사업을 시행하여 이를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피지컬 인공지능의 도입·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안 제27조 및 제28조)
<p>「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p> <p>차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105호(전용기 의원 등 10인)] ('26.6.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지하안전평가 등은 지하안전 확보 및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사업 시행 전후의 지반 안정성과 위험요인을 조사·평가하는 핵심적인 안전관리 절차이며, 지하안전평가 등에는 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및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 - 그러나, 현행 제도상 지하안전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수준인 과태료 2천만 원과 비교할 때 낮은 측면이 있어, 유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 제고할 필요 - (제안방향) 지하안전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하안전평가 등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 강화(안 제56조)
<p>「산업안전 보건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110호(김위상 의원 등 11인)] ('26.6.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다양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잠재적 위험 요인 관리에 효과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석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적극

법률명	주요 내용
<p>규제 강화</p>	<p>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방향)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험 요인 관리와 잠재적 원인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해 기술지원,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0조의2 신설)
<p>「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113호(이종욱 의원 등 10인)] ('26.6.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농경지로 활용되던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주택단지로 전환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산물이 주변에서 생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구역 내에 있는 공판장, 공동구판장은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통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 (제안방향)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증대 유도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시대적 변화와 지역 여건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하여, 본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방치하기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허용(안 제13조)
<p>「조세특례 제한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129호(박대출 의원 등 10인)] ('26.6.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주고 있으며, 준공후미분양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상황 - 그런데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해 건설업 등 지방의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세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 - (제안방향)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3년 연장(안 제98조의9제1항 및 제2항)
<p>「산업안전 보건법」</p> <p>규제 차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130호(박해철 의원 등 10인)] ('26.6.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건설공사 발주자는 설계자,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건설공사의 기간과 비용을 산정하는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체임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과 의무가 부족하다는 지적 - 또한, 건설현장은 다수의 건설공사 도급인이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와 종사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제안방향)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착공 전 설계단계부터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 저감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의 안전보건대장 작성·제출 의무를 명확히 규정(안 제67조제3항) ▪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변경, 공사비·공사기간 조정 등의 개선 조치 의무를 부여(안 제67조제4항 및 제5항) ▪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적정성 검토를 거친 안전보건대장을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도록 의무 부여(안 제67조제6항) ▪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에 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 확인 의무 부여(안 제67조의2)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자에게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비용과 기간을 산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가설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의 설계도서 반영 의무 부여(안 제67조의3) ▪ 건설공사 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지정하는 경우 건설공사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건설공사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작업의 시기·내용 조정 등 안전보건조정자의 개선 요청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안 제68조) ▪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175조) ▪ 특별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조정자의 개선 요청에 불응한 건설공사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175조)
<p>「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134호(배준영 의원 등 11인)] (‘26.6.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하기 위해 지하개발 사업의 관리, 지하안전평가 및 지하안전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중 - 그런데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 및 재정 지원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지하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개발 사업의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다수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가입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신속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 또한, 현행 지하안전평가가 인·허가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지하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개발 사업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은 준공 이후에도 수년에 걸쳐 복합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하므로 지하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업이 지반 및 지하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 - 나아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반침하 관련 정보의 부재로 지역 주민 등 관련 시설물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제기 • (제안방향) 다음의 사항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사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안 제6조제2항) ▪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주변 지반 및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여 지하개발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제도화(안 제20조의2 신설 등) ▪ 민간사업자인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 가능토록 규정(안 제41조의2 신설 등) ▪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하여 지하안전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지반침하 위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7조의2 신설)
<p>「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138호(이종배 의원 등 11인)] (‘26.6.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쟁의권 보호를 위해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대체인력 채용 및 도급·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 그런데 폭력·점거 등 쟁의행위로 보호될 수 없는 불법행위와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사용자의 신속한 대응 수단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법률명	주요 내용
	<p>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방향) 사용자는 정의행위로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조정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기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61조의3 신설)
<p>「조세특례제한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163호(문진석 의원 등 10인)] ('26.6.1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 제77조의2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 중 - 그런데 현재 대토보상의 방식을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건축물 및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바, 현행법은 과세특례 대상을 토지로만 한정하고 있어 위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분 및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분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못하는 공백 발생 - (제안방향)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건축물 및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분을 추가하고,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77조의2) ※ 본 법률안은 서범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40호)의 의결 전제
<p>「공공주택특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166호(문진석 의원 등 12인)] ('26.6.1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의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 등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중 - 그런데 대다수의 지역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더라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지 않으면 해당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지역 간 사업 추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 제기 - (제안방향)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역의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요청을 건의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도록 의무화(안 제40조의7 및 제40조의13)
<p>「중소기업인공지능활용·확산촉진에 관한 특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171호(이철규 의원 등 11인)] ('26.6.10.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 전반의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인공지능 도입에 필요한 자금, 전문인력, 데이터, 기술 역량 등이 부족하여 활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 특히 대기업 중심의 인공지능 투자와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중소기업은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적용과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또한, 인공지능 학습 및 활용에 필수적인 데이터 확보의 한계, 규제 불확실성, 전문인력 부족 등 구조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 - 한편, 미국 등 주요국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 기술지원, 규제 개선, 인력

법률명	주요 내용
	<p>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령 및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방향)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책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토록 규정(안 제5조 및 제8조) ▪ (전담기관 지정 및 추진체계 구축)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사업 수행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규정(안 제9조) ▪ (인공지능 활용촉진사업 및 금융·세제 지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컨설팅, 자금 지원, 기술개발,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활용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자금, 보증, 세액공제 등 금융·세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 (인공지능 전문기업 및 선도중소기업 육성)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인공지능 활용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도중소기업으로 확인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 ▪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확대) 재직자 및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한 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현장에의 연계·파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 ▪ (인공지능 데이터 확보 및 활용 기반 강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생산·가공·유통을 지원하고,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를 마련하며, 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규제개선 및 규제대응 체계 마련)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직면하는 규제에 대해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준수 지원, 규제배심원단 운영 등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환경을 조성(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 (지역 기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허브 지정, 인프라 구축, 창업 대학원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중심의 인공지능 활용·확산 촉진(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 (행정적 지원 및 책임 강화)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및 위임·위탁 근거 규정(안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p>「도시 개발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172호(김화정 의원 등 10인)] ('26.6.1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할 의무 부과중 - 그런데 이미 인근에 충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됨에 따라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저해하며, 주택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 제기 - (제안방향) 도시개발구역 주변지역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하여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안 제71조의2제2항제3호 후단 신설)
<p>「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174호(김화정 의원 등 10인)] ('26.6.1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규정 중 - 그런데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방향) 정비구역에서 일정한 거리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의 이행을 같음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68조 제4항제5호의2 후단 신설)
<p>「산업안전보건법」</p> <p>규제·차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180호(박홍배 의원 등 11인)] ('26.6.1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제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벌금형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처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 존재 - 또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기업에 비용 절감 등의 불법적 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의 기대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 - (제안방향) 근로자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안 제39조의2 및 제161조의2 신설)
<p>「하도급법」</p> <p>규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189호(민병덕 의원 등 10인)] ('26.6.1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방향) 현재 원도급자의 부실 등으로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한 대금이 하도급자에게 미·지연지급 되는 등 사례가 빈번히 발생 중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지급·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 다만, 안 제14조의2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도급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에 합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 하도급대금 등 지급채무 관계는 변동이 없도록 규정(안 제14조제1항제2호)
<p>「조세특례제한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192호(박대출 의원 등 10인)] ('26.6.1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으로 해당 공익사업이 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나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해당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 - (제안방향)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안 제77조제1항)
<p>「지방투자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203호(윤준병 의원 등 11인)] ('26.6.12.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물류망 확충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 - 그러나 제조업으로 밀집된 주력산업이 산업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게 되자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청년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게 되었고, 인구, 소득, 산업·지역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고용 및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소멸위험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28개 시·군·구 중 130개(57.0%)가 소멸위험지역이며, 그 중 57개(25.0%)는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나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 - (제안방향)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운영하는 기비발전특구 지정 및 기

법률명	주요 내용
	<p>회발전특구 규제 특례 부여,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기회발전특구 기반 확충 등을 규정하여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고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지방의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및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의 산업과 지역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안 제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 촉진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 부여(안 제3조) ▪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지방투자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 지방에 소재하는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을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도록 규정(안 제11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 ▪ 시·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관할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투자 유치와 기업 활동 등 기회발전특구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규제특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조) ▪ 기회발전특구에서 지역기반산업을 추진하려는 자는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당 산업과 관련된 인·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 ▪ 지역기반산업을 해당 산업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0조) ▪ 기회발전특구에서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지역기반산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산업이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 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4조) ▪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6조 및 제27조)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8조)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 국유·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의 특례 규정(안 제29조 및 제30조) ▪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1조)
<p>「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204호(천준호 의원 등 10인)] ('26.6.1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중 - 그런데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이 사업추진을 반대할 경우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시행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조합설립을 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과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 (제안방향)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요건을 3분의 2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서 5분의 3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로 완화(안 제23조)
<p>「지방자치 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210호(윤준병 의원 등 11인)] (‘26.6.1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물류망 확충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 왔으나, - 제조업으로 밀집된 주력산업이 산업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게 되자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청년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게 되었고, 인구, 소득, 산업·지역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인 인구, 고용 및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소멸위험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28개 시·군·구 중 130개(57.0%)가 소멸위험지역이며, 그 중 57개(25.0%)는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나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 - (제안방향)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운영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 규제 특례 부여,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기회발전특구 기반 확충 등을 규정하여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고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을 정비(안 제2조제13호 및 제23조 삭제 등) <p style="text-align: center;">※ 본 법률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203호)의 의결 전제</p>
<p>「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224호(노종면 의원 등 12인)] (‘26.6.1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인 반환공여구역을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 중 - 그러나, 최초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 과정이 포함되는 것에 반해, 종합계획을 수정할 때는 이러한 과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중 - 또한, 국비 지원 대상이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로만 한정되어 있어, 실제 개발 사업의 연계성이 높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 (제안방향)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환경 변화에 맞춰 종합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며, 국가 자금 투입의 범위를 현실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토지 매입비 지원 대상을 ‘주변지역’까지 확대(안 제7조 등)
<p>「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241호(구자근 의원 등 10인)] (‘26.6.1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물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의미 - 그런데 최근 지식산업센터 내 미분양률 및 공실률이 증가하여 유휴공간이 많이 발생하면서 지식산업센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 - (제안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안 제28조의9 신설)

법률명	주요 내용
「지방세 특례 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248호(임태영 의원 등 10인)] ('26.6.1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3년간 해당 주택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특례 운영 중 - 그러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초기 분양금 마련이 곤란한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장기간에 걸쳐 소유권을 분할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구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 - (제안방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의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로 3년 연장(안 제31조제8항)
「건축물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272호(임태영 의원 등 10인)] ('26.6.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령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을 위주로 규정 중 - 그런데 노후화된 공장 등은 구조적 안전성이 낮거나 화재 등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노후 건축물의 경우 불법 증축, 가연성 자재 사용, 구조적 노후화 등 위험요인이 누적됨에 따라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대전 대덕구 대덕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경우 불법 개조, 화재에 취약한 구조가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 - (제안방향)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화된 건축물의 경우에도 정기점검을 받도록 의무화(안 제1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282호(임태영 의원 등 11인)] ('26.6.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중 -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와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 보강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없는 문제 발생 - (제안방향)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2조제5항)
「수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287호(한정애 의원 등 12인)] ('26.6.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①) '25년 강릉 가뭄 재난사태 선포 등 극한 가뭄으로 산업 및 생활용수 제한 등의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산업용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총인구 감소, 쌀 경지면적 감소 등으로 생활 및 농업용수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행 5년 단위의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는 급변하는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는 데 한계 -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발사업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개발구역 내에서 수도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현행법 체계에서는 전용수도사업 인가를 받은 경우와 급수 설비를 제외하고는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 - 또한, 수도시설 인근에서 수도공사 이외의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수도시설 매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비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한 수도시설에서의 수질사고, 수도공사가 아닌 굴착공사 중 상수관로 손괴

법률명	주요 내용
	<p>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②) 2019년 인천 적수 사고 이후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인력·장비 등 요건과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여야 하나, 현행법 체계에서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부적격자에 대한 기준과 점검 등에 대한 관리 규정 미비 - (제안이유③) 현행법 체계에서는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의 설치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면,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발사업 관련 개별 법령에서는 정비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중 - 대법원 판례에서도 현행법과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고 법리를 해석한 바 있기에 현행법 체계에서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 - (제안이유④)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하는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현행법 체계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도사업자와 개발사업 시행자 간 소송이 다수 발생하는 등 그동안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현행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기 지속 - 또한, 현행법 체계는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장래에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하여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 등 개발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조성된 택지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그동안의 소송 판례를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 - (제안방향)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개선하여 기후위기,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물수급 여건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고, 수도사업자의 수도 설치비용 부담의 범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수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에 대한 허가 절차와 굴착공사 전 수도시설의 매설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협의절차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를 법령에 명시하여 부적격 사업자를 사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안 제4조) ▪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는 수도사업자의 허가를 받아 수도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 처벌규정 마련(안 제17조의2 및 제87조) ▪ 수도시설 공사 이외의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수도시설의 매설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수도사업자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처벌규정 마련(안 제20조의2, 제83조, 제84조)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결격사유를 명문화하여 부적격자의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법자의 예측 가능성 증대 유도(안 제21조의5, 제66조, 제87조)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대행업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실효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 규정 마련(안 제66조 및 제87조) ▪ 수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도 설치비용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주체 명확화(안 제70조) ▪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하여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원인자의

법률명	주요 내용
	<p>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1조)</p>
<p>「농어촌 정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300호(임종득 의원 등 10인)] ('26.6.1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로 하여금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중 - 그런데 농로(農路)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 활용 등에 사용되는 길로서 필수 농업생산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폭우 등 자연재해와 노후화로 인한 침하·파손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고 야간 안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주민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 - (제안방향)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농로에 대해 노면의 파손상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등급제를 도입·시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p>「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310호(한정애 의원 등 11인)] ('26.6.1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풍력발전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최근 근로자가 풍력발전기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 등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근로자 3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 발생 - 이는 풍력발전소와 달리, 풍력발전기는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에 해당하여 현행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기에 위험성에 비해 필요한 소방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 - (제안방향) 건축물 외에 발전설비 등의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제1항제3호)
<p>「건설산업 기본법」</p> <p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margin-top: 10px;">규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337호(김화정 의원 등 12인)] ('26.6.1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①) 현행법은 2018년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여 건설사업자가 일정 시공능력을 확보한 경우 등록 업종에 상관없이 상호 간의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한 바 있으나, - 생산구조 개편 이후 종합건설업체는 별다른 제약 없이 전문공사에 진출하고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 수주에 필요한 다수 면허보유 곤란, 실적부족 등으로 인해 입찰참여 자체가 어려워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로 전문시장은 57%가 개방된 반면, 종합시장은 8.7%만 개방되어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 또한, 업역 규제 폐지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을 활성화하여 다단계 하도급을 저감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었으나, 개편 이후 새로운 형태의 불법 하도급이 증가하는 등 오히려 건설산업이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 제기 - (제안이유②) 전문건설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의제 부대공사 제도가 1989년 도입된 이후 2008년 1월 1일부터 3억 원 미만의 공사까지 허용되었으나, 지난 18년 동안 물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제안방향)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공사 범위를 각각 축소·확대 조정하고, 생산구조 개편 당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참여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유효기간에 관한 부칙을 삭제(안 제16조제1항 등)
<p>「조세특례 제한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358호(정진욱 의원 등 10인)] ('26.6.1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최근 이란 전쟁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특정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원유의 안정적인 수급은 국가 핵심 산업의 가동뿐만 아니라 민생 경

법률명	주요 내용
	<p>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원유 도입선의 다변화가 시급한 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중동 산유국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 원유 도입선인 캐나다, 중남미 등에서 생산된 원유는 중동산 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질(重質)이고 산가(Acid Number)가 높으며 황 등 불순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이를 국내 정유 공장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식성 재질로의 교체, 탈염 설비 확충 등 대규모의 시설 투자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나 -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이러한 설비투자는 민간 기업이 온전히 감당하기에 재무적 부담이 크므로 국가 안보 차원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선제적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맞춤형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제안방향) 정유사의 선제적인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국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390호(강명구 의원 등 11인)] ('26.6.2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의 증축에 대해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붕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수·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증축은 노후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규정상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지 않은 상황 - 그런데 최근 평슬라브 지붕 등 노후 지붕의 누수·결로 방지를 위한 지붕 증축이 무단증축으로 적발되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증축은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물의 보수·유지 목적이 강함에도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주민의 부담이 커지고 행정집행상 혼선도 발생 - (제안방향) 노후 주택 소유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해 지붕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누수·결로 방지를 위한 지붕의 증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증축의 경우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1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409호(김위상 의원 등 10인)] ('26.6.2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성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원청기업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관해 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로 해석되어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발생 중 - (제안방향) 사용자성 인정에 관한 규정에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여 사용자성 인정범위에 대한 혼란 방지 및 법적 명확성 제고 유도(안 제2조제2호 후단)
「하도급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410호(하성무 의원 등 11인)] ('26.6.2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한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중 - 그러나 다수의 기업이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법정 최장 기한인 60일을 채워서 지급하고 있어 즉각적인 자금 회수가 필요한 중소 수급업체는 원자재 구매와 인건비 지출 등 자금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 - (제안방향) 하도급자의 자금 유동성 개선과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최장 60일에서 40일로 단축(안 제13조 등)

법률명	주요 내용
<p>「상생 협력법」</p> <p>규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411호(하성무 의원 등 12인)] ('26.6.2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중동사태 및 내수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정기한 60일은 지나치게 길어 납품대금 회수 지연을 조장하여 유동성 경색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실제 지급기간과도 동떨어져 있어 법률이 결체 관련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제안방향) 수탁·위탁거래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40일로 단축(안 제22조 및 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법률안은 하성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10호)의 의결 전제
<p>「하천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434호(윤준병 의원 등 10인)] ('26.6.2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상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하도록 규정 중 - 그런데 지방하천의 경우 재정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방정비 완료구간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이 국가하천 대비 저조하여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국가하천에 비해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 유역에서 보다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 중 - 이에 더해 기존 국고보조로 추진하던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 및 권한이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별 재정여건별 하천정비수준의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천관리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하천 관리책임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 (제안방향)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홍수로 인한 재해방지를 위해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고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 강화(안 제7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등)
<p>「상생 협력법」</p> <p>차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440호(김남근 의원 등 17인)] ('26.6.2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손해를 입은 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또는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기 초 미국의 공정경쟁법 분야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일종인 3배 손해배상(Treble Damage) 제도는 최소한 3배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 고의적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위하적 효과가 있다는 경제학계의 분석 등을 바탕으로 고의 또는 악의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실손해의 3배로 정한 액수를 손해배상액수로 판결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설계 ▪ 그러나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3배 이내'로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법원의 재량에 맡겼는데, 실손해 배상제도에만 익숙해져 있는 법원은 실손해 위주의 일반 손해배상 제도와 거의 유사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고 있지 못한 상황 - (제안방향)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

법률명	주요 내용
<p>「공정거래법」</p> <p>차별 강화</p>	<p>정된 금액의 3배 또는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 또는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강화(안 제40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448호(김남근 의원 등 22인)] (*26.6.2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손해를 입은 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기 초 미국의 공정경쟁법 분야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일종인 3배 손해배상(Treble Damage) 제도는 최소한 3배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 고의적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위하적 효과가 있다는 경제학계의 분석 등을 바탕으로 고의 또는 악의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실손해의 3배로 정한 액수를 손해배상액수로 판결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설계 ▪ 그러나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3배 이내'로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법원의 재량에 맡겼는데, 실손해 배상제도에만 익숙해져 있는 법원은 실손해 위주의 일반 손해배상 제도와 거의 유사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고 있지 못한 상황 - (제안방향)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강화(안 제10조)
<p>「주택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451호(최수진 의원 등 10인)] (*26.6.2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 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려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 중 - 그런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하나의 필지에서 동별로 분리되어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동의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리모델링의 추진을 원하는 구분소유자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지적 제기 - (제안방향) 주택단지 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가 토지분할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도모(안 제76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p>「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459호(민홍철 의원 등 10인)] (*26.6.2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지난 2024년 1월 현행법 제정으로 철도 상부부지개발사업과 철도지하화사업을 연계·통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심 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도시철도는 국유철도와 도시철도 간 계획수립 주체 등의 차이로 인해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그런데 철도로 인한 지역단절 등의 문제는 도시철도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어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지하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제안방향)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도시철도를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상부부지개발사업과 철도

법률명	주요 내용
<p>「하도급법」</p> <p>규제 강화</p>	<p>지하화사업의 통합개발모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제1항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474호(하성무 의원 등 11인)] ('26.6.2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피가 크거나 무거워 이전하기 곤란한 하도급 목적물 등의 경우 원도급자가 검사를 시작한 때를 목적물 등을 수령한 때로 간주하도록 규정 중이나, 현장에서는 하도급자가 목적물의 제조 등을 완료하여 입회검사를 요청하더라도 원도급자가 부당하게 현장 방문 및 검사를 미루는 사례가 발생 중으로 - 이로 인해 대금 지급의 기준점이 되는 법적 수령일이 연기되어 하도급자가 자금난을 겪게 되는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 발생 - (제안방향) 원도급자가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 등에 대해 하도급자로부터 검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원도급자가 기간 내에 검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목적물 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하도급자에게 부당한 납품 지연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안 제9조제3항 신설)
<p>「하수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484호(한정애 의원 등 11인)] ('26.6.2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하여금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한 개선 등 관리를 위해 매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중 - 다만, 기술진단 대행 전문기관 중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해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영구히 대행할 수 없도록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계획, 설계, 시공 등에 참여한 자가 본인의 과오 은폐 등의 시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나 기술진단은 미생물반응조, 송풍기, 펌프 각종 계측기 등의 성능이 설계당시와 비교해 최적의 운영비용, 방류수질을 도출하는 공정의 유기적 연계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물리적 결함과 내구성을 진단하는 안전진단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이미 종료된 과거 20, 30년 전의 설계·시공 실적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 (제안방향) 공공하수도의 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한 자의 기술진단 참여 제한 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담보 책임기간으로 한정하여, 불합리한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하수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모(안 제20조의2제1항제2호)
<p>「국가계약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490호(박성훈 의원 등 11인)] ('26.6.2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지방계약법」은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일부 규정 중 - 그런데 국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의무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기 - (제안방향) 국가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 상항 명시(제5조의3 삭제 및 안 제26조의2 신설)
<p>「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497호(김종양 의원 등 12인)] ('26.6.25.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최근 건설산업은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장 인력 부족 및 고령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여건 속에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완성하는 모듈러 건축 공법은 기존 공법 대비 약 20~30%의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품질의 균일성 및 안전사고 저감에 유리한 건설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 - 그런데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현장 공사 중심의 기준과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와 산업 성장에 저해된다는 지적 제기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러 건축에 적합한 설계·시공·감리 및 품질 기준과 품질관리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책 추진체계 역시 미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체계적인 확산이 어려운 상황 - 한편, 모듈러 건축공사 발주시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시장이 편중될 경우 지역 중소 건설업체는 신산업 진입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할 우려가 있으며, 고금리·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방 건설업계의 폐업·부도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듈러 건축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건설업 회복 및 국토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 제기 - (제안방향)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듈러 건축의 정의 및 맞춤형 발주방식과 설계·감리, 공사 기준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모듈러 건축물 보급 활성화와 산업발전 여건 조성, 지역업체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규제완화 및 지원 특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모듈러 건축산업의 활성화 기반조성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안 제1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모듈러 건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의무 부여(안 제5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해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모듈러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듈러 건축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에 지역업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되도록 규정(안 제15조 및 제16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 부재 등의 안정적인 생산과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 또는 건축물의 전부를 생산하는 공장을 품질기준 및 생산기준 등에 따라 등급별로 인증하는 모듈러 생산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생산인증을 받은 공장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확대 및 품질향상을 위해 모듈러 건축기술 적용 수준과 건축물의 사전제작률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6조 및 제27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인증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생산인증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등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39조 및 제41조)
<p>「산업안전보건법」</p> <p>규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518호(서왕진 의원 등 10인)] ('26.6.2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 발암물질로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석면해체·제거작업은 형식적 관리가 아닌 실제 작업현장에서부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될 필요 - 그런데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 완료 후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가 형식적인 내용에 그쳐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 (제안방향) 석면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에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장비에 관한 정보, 작업장의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124조)
<p>「석면안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519호(서왕진 의원 등 10인)] ('26.6.25. 일부개정 발의)

법률명	주요 내용
<p>「관리법」</p> <p>규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석면조사 제도를 두고 있으나, 최초 조사 이후 건축물의 해체·제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노후화된 경우에 대비하는 재조사 및 사후 관리 기준이 미비한 실정 - 또한, 유치원이나 학교 등 취약시설의 부속 토지 및 야외 공간에서 석면 잔재물 발견 시 신속한 출입 통제나 오염도양 정확 등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 부족 - (제안방향)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축물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석면해체·제거작업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조사 주기를 명확히 하고, 보수·보강 후 실내 석면농도의 측정 및 기록을 의무화하며, 학교 부속토지 등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물질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안 제21조 및 제22조 등)
<p>「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526호(최은석 의원 등 11인)] ('26.6.2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 중 - (제안방향) 그에 따라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폭력행위 및 노사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의 쟁의행위 관련 방어권 보호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안 제2조제2호) ▪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주장과 관련하여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주장으로 변경(안 제2조제5호) ▪ 점거형태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현행 ‘생산 기타 주요시설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에서 ‘사업장’으로 규정하여 금지행위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2조제1항)
<p>「산업안전보건법」</p> <p>규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559호(김주영 의원 등 10인)] ('26.6.2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재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도급인은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법 제64조)에 대한 구성·운영을 각각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 중 - 다만, 현행 규정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별로 노사협의체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산재 예방 및 현장안전관리강화 측면에서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은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 또한, 건설공사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보다는 노사협의체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건설업 특성에 부합한다는 현장의견 다수 - (제안방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원·하청·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함께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하청 간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재해예방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대상에서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건설공사 현장 제외(안 제24조제1항) ▪ 도급인·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의무대상에서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건설공사 현장 제외(안 제64조제1항제1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 부여(안 제75조제1항)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 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각각 같음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건설공사 도급인(원청) 외에 관계수급인(하청)이 없어 노사협의체 구성이 불가능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안 제75조제2항)
<p>「석면안전관리법」</p> <p>규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562호(서왕진 의원 등 10인)] ('26.6.2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석면건축물의 규모나 석면자재의 손상 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안전관리 인력 지정 기준을 두고 있어, 대규모 건축물이나 취락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에 한계 발생 -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안전용품의 구비 의무가 부재하고, 학교 등의 부속토지 및 야외공간에서 석면 잔재물 발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 - (제안방향)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자재 손상 우려가 큰 석면건축물에 대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필수 안전 용품 구비를 의무화하며, 안전관리인은 구비된 안전용품의 정기적 확인 및 석면 비산 우려가 발생 시 즉각적인 방지 조치 등을 취하도록 의무화하며, 학교 등의 옥외공간에서 석면 의심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초기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안 제23조, 제30조, 제49조)
<p>「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9567호(이진숙 의원 등 23인)] ('26.6.2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 중이나, 사용자 지위의 확장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거대 산별노조 등 원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독점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성과급, 채용 관련 사항 등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원청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에 따라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가 이루어져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 및 취업 준비 청년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 지적 - (제안방향) 실질적 지배력과 관련된 사용자 지위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쟁의 제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산업 혼란을 막고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권 및 청년들의 취업 기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은 원청업체의 사용자는 독자적인 인사·노무 관리 권한 및 예산·조직을 갖춘 독립적 경영주체로 인정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안 제2조제2호 단서 신설)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사권 행사에 관한 사항, 경영상 판단과 연계되는 성과급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자산 운영과 관련된 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행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41조제3항 신설) ▪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에 한정하여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규정(안 제43조)



건설산업 관련 하위법령 동향

종합개요

- 이달 주요 건설산업 관련 하위법령 입법·고시 현황을 종합하면, 총 34건의 제도 정비가 추진됨.
 - [시행] 총 30건의 법령 및 행정규칙이 시행·발령되었으며, 시행령(9건)과 시행규칙(8건) 등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기준과 행정 절차를 구체화하는 실효적 기준 정비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됨.
 - [입법·행정예고] 총 4건의 제도개선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특히 '새만금 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 확대, 지붕공사 시공자격 관리 강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승급요건 신설, 조달청 시설공사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등 향후 건설산업의 수주·계약·인력·안전관리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변화가 예고됨.

구 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자침
시행	9	8	7	1	5	-
입법·행정예고	2	-	-	-	1	1

- 주요 하위법령 개정은 △주택공급·지역거점 개발 촉진, △공공조달 참여조건 및 적정대가 개선, △하도급·안전·인력관리 기준 강화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됨.
 - [주택공급·지역거점 개발 촉진] 신생아·지역균형발전·도심융합특구 특별공급 신설, 주택조합 자격 기준 완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권한 확대, 예타 지역균형성장 가중치 상향 등을 통해 주택공급과 지역 거점 개발 기반을 정비함.
 - [공공조달 참여조건 및 적정대가 개선] 건설엔지니어링 낙찰하한율 2%p 상향, 지자체 종합공사 지역제한입찰 150억 원 미만 확대, 조달청 시설공사 사회적기업 우대 확대 등을 통해 공공조달 참여 여건과 적정대가 확보 기반을 개선함.
 - [하도급·안전·인력관리 기준 강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참여제한·영업정지·과징금 기준을 강화하고, 지붕공사 시공자격 관리, 위험성평가·재해조사 체계 정비, 기능등급 승급요건 신설 등을 통해 현장 안전과 인력 숙련도 관리 기준을 강화함.
- 이번 달 하위법령 개정 흐름은 주택공급·지역개발과 공공조달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과, 하도급·안전·인력관리 기준 강화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리됨.
 - 따라서, 건설기업 및 디벨로퍼는 특별공급 신설, 지역제한입찰 확대, 조성토지 수의계약 대

상 확대 등 완화·지원 조항을 활용해 신규 사업 및 수주 기회를 점검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제재 강화, 위험성평가·재해조사 정비, 지붕공사 시공자격 관리 등에 대응하여 하도급·안전 보건·인력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구분	하위 법령명	소관부처	공고(공포)번호	
시행령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35866호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36259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374호	
	「도로법 시행령」		제36310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373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638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6404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6437호	
	「주택법 시행령」		제36436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26-804호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제2026-82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470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579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8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59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9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99호	
「주택법 시행규칙」	제1598호			
행정규칙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제1838호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50호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953호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제1955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획예산처	제62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63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제239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제367호	
	고시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제2026-38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제2026-259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제2026-262호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제2026-266호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2026-288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2026-852호		
	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조달청	제2026-293호

1 주요 하위법령 개정 현황 : 6월 시행 법령

- 「^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불법 하도급 제재 및 처분 강화(6월 23일)
 -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의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불법 하도급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및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임.
 - 포상금 지급대상이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 및 입증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서 ‘불공정행위 사실을 신고한 자’로 확대되고, 기존 2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현장 내 불공정 행위 신고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음. 또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을 하도급한 경우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기간이 1년 또는 2년으로 상향되는 등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됨.
 -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수급인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기간 기준이 상향되고, 도급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도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기준이 정비됨. 이에 따라 조달 및 현장 관리 부서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괄 하도급, 무자격자 하도급, 재하도급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업체의 등록업종과 시공자격을 사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음.
 - 본 개정령은 6월 23일 자로 공포 즉시 시행됨에 따라, 시행 전 접수된 신고의 포상금 지급 및 시행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과조치가 적용됨. 다만 시행 이후의 하도급 계약 및 현장 운영에 대해서는 강화된 제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하도급 구조와 계약 요건을 신속히 점검하고, 하도급 계약 적법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불법 하도급 신고 유인 극대화 및 징벌적 제재를 통한 건설 현장 불공정행위 원천 차단
배경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 및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영업정지·참여제한 등) 실효성 제고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행위 사실 신고자로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및 200만 원 지급 상한 폐지 • 공사 전부 또는 주요 부분 하도급 시 공공공사 참여 제한 기간 상향(1년·2년) •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수급인의 영업정지 기준을 6개월에서 8개월로 상향 • 도급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 비율(24%~30%)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기준 강화

- 「^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위험성평가 및 재해조사 강화(6월 1일)
 -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시기를 시행규칙상 명확히 하고, 화재·폭발·붕괴 등 일정 요건의 산업재해까지 재해 원인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해조사보고서 작성·공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임.
 -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수준 결정,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이행 순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는 추가 유해·위험요인 발생 우려 또는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하도록 명확화됨.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공정 변경, 장비 투입, 작업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위험성평가를 적시에 실시·관리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 절차가 강화되어, 사업주는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근로자를 위험성 평가에 참여시키고 필요시 설문조사·면담 등을 병행할 수 있음. 위험성평가 전에는 실시 일정을, 평가 후에는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 결과를 공유해야 하며, 관련 결과는 3년간 기록·보존해야 함.
- 재해 원인조사 대상이 화재·폭발, 붕괴, 추락, 질식·중독, 화학물질 누출, 폭염작업 등으로 확대되고,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과 예방조치 이행 여부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 따라서 현장별 유해요인 발굴, 개선대책 이행, 관련 기록 보존을 체계화하는 안전관리 프로세스 정비가 필요함.
- 본 개정규칙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각 사업장은 수작업 중심의 일회성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위험성평가 실시 이력, 근로자 참여 내역, 개선대책 이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함. 특히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고 예방조치, 현장점검, 개선 이행 자료를 사전에 축적하는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요구됨.

구 분	주요 내용
시사점	실질적 위험성평가 이행 강제 및 재해조사 결과 공개를 통한 기업의 안전보건 책임성·투명성 제고
배경	반복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내실화 및 화재·붕괴 등 주요 산업재해의 원인 규명 체계 확립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파악·결정·대책수립) 및 시기(최초·정기·수시) 구체화 •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순회 점검 등) 및 결과 공유·기록물 3년 보존 의무화 • 화재·폭발, 붕괴, 추락, 폭염작업 등 일정 요건의 산업재해로 원인조사 대상 대폭 확대 •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국민 공개 의무화

• 「**㉓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 : 낙찰하한율 상향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감점 정비(6월 5일)

- 공공계약의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 기조에 맞추어 낙찰하한율을 2%p 인상하고,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공공 계약 적정대가 확보를 지원하려는 개정임. 아울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가 제한기간 만료 후에도 감점 적용을 받는 현행규정을 개정하여 과잉제재를 해소하고 타 규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음.
- 입찰가격 평점 기준은 낙찰하한율 2%p 인상 취지에 맞추어 사업 규모별로 조정되었으며, 예정가격 대비 90.25%~97.5% 수준의 구간별 기준이 적용됨. 이에 따라 저가 투찰 중심의 가격 경쟁보

다는 적정대가를 고려한 투찰구간 설정이 중요해지고,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공공계약 대가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영업 및 수주 전적 부서는 개정된 입찰가격 평점 산식을 입찰 전략에 반영하고, 사업 규모별 사업 수행능력·입찰가격 배점구조를 고려하여 투찰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고시금액 미만 사업은 가격평가 비중이 높고, 10억 원 이상 사업은 사업수행능력 비중이 높은 구조이므로, 사업 규모에 따라 가격 경쟁력과 기술평가 요소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실무 프로세스가 요구됨.
- 본 개정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따라서 신규 입찰공고 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가격평가 기준과 사업수행능력 배점체계를 반영하여 투찰전략을 조정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감점 정비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참여 가능성과 경쟁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공공계약 적정 대가 보장을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 및 과잉 제재 완화를 통한 수주 환경 개선
배경	범정부 차원의 중·소 업체 적정 대가 보장 추진 및 공사 등 타 분야 심사 기준과의 형평성·정합성 확보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 산식 조정을 통해 범정부 목표인 낙찰하한율 2%p 인상분 반영 • 고시금액 미만 사업수행능력 심사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만료 업체에 대한 추가 감점 적용 규정 폐지

- 「^④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입찰 브로커 제재 및 형사고발 근거 명시(5월 29일)
 - 공공주택 공사입찰 과정에서 브로커 등을 통한 입찰가격 조작 및 담합 유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로커’와 ‘입찰견적대행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불공정행위 유형과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한 개정임. 이를 통해 입찰·낙찰·계약체결 과정에서 외부 개입에 따른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고, 공공주택 공사입찰의 경쟁질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브로커 또는 입찰견적대행사가 다수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사전 모의·조율하여 균형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입찰자 간 가격 공유를 증대하고 동일·유사한 내역서 배포를 통해 담합을 유도하는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입찰 담합이나 가격 조작의 대가로 성공보수 등을 요구·수수하는 행위도 불공정행위로 규정되어, 입찰 과정에서의 외부 대행 활용 및 가격정보 공유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짐.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한 경우에도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브로커 등의 행위가 입찰방해죄 등으로 처벌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수주 부서는 산출내역서 작성·제공 경로, 가격정보 공유 여부, 성공보수 약정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본 개정훈령은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므로, 공공주택 공사입찰을 준비하는 업체는 견적 산출 과정과 외부 대행 활용 방식의 투명성을 재점검해야 함. 특히 계약담당공무원이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 의무가 있으므로, 입찰자료 관리, 견적 산출 이력 보존, 가격정보 접근통제 등 입찰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외부 세력(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개입 근절 및 형사고발을 통한 투명한 공공주택 입찰 질서 확립
배경	행정 공백 해소를 위한 불공정행위 주체 명확화 및 입찰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분 근거 마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 과정에 개입하는 '브로커' 및 산출내역을 제공하는 '입찰견적대행사' 용어 정의 신설 균형가격 인위적 조작, 입찰가격 공유 중개, 성공보수 요구 등 불공정행위 구체화 및 형사고발 규정 신설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관여·협조 금지 의무 부여 및 조사 자료 제출 의무화 가담자 처벌 결과에 따라 입찰자 등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실시

• 「**⑥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선금 관리 강화 및 지역입찰 확대(6월 2일)

-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선금 지급 및 집행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을 상향하여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 가능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임. 기존 계약금액의 100%까지 가능했던 선금 지급 한도를 70%로 조정하고,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전용계좌 사용, 수령 선택권 보장, 계약 해지 기준 신설 등 선금 관리 장치를 정비한 점이 특징임.
-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이 기존 100억 원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입찰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반면 선금 지급 한도 조정과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관리 기준이 강화되어, 선금 수령 이후 사용계획과 실제 집행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재무 및 회계 부서는 공공 발주처로부터 선금을 수령하는 경우 선금사용계획서 작성, 전용계좌 사용 기준, 집행 증빙자료 관리 절차를 사전에 점검해야 함. 또한 영업 부서는 지역제한입찰 가능 금액이 15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 종합공사 발주 물량을 검토하고, 지역별 입찰 참여 가능성과 수주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본 개정 기준은 6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기준 적용 대상 지자체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선금 수령·집행·정산 절차와 지역제한입찰 참여 전략을 함께 점검해야 함. 특히 선금 관리의 투명성과 지역입찰 기회 확대가 동시에 강조되는 만큼, 재무관리 부서와 영업부서 간 협업을 통해 자금 집행 관리와 입찰 파이프라인 검토를 연계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지자체 계약 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 건설사의 공공 수주 기회 대폭 확대
배경	선금 부당 사용 방지를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금 지급 한도를 계약 금액의 70%로 축소 및 계약상대자의 선금 수령 선택권 보장 선금 전용계좌 이용 및 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선금 관련 계약 해지 기준 신설 지역제한입찰이 가능한 종합공사 대상 한도금액을 현행 100억 원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2 주요 하위법령 개정 현황 : 입법 · 행정예고 법령

- 「^①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수의계약 확대 및 지역기업 우대
 - 새만금사업의 복합적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과 지역기업 우대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임. 특히 새만금사업지역의 복합적 개발 및 도시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조성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점이 핵심임.
 - 지역기업 우대 대상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전북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기업은 새만금사업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용역계약에서 우대 적용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음. 또한 조성토지 수의계약 공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새만금사업지역 내 복합개발 및 도시기능 증진과 관련된 사업참여 방식이 보다 다양해질 수 있음.
 - 수주 및 설계·엔지니어링 부서는 새만금사업 관련 용역계약에서 지역기업 우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전북 지역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발사업 및 투자 부서는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조성토지 공급 절차와 선정 방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복합적 개발 및 도시기능 증진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새만금사업 관련 개발·용역 참여를 검토하는 기업은 조성토지 수의계약 공급요건과 지역기업 우대 적용 범위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함. 특히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 추가와 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만큼, 사업개발 부서와 수주·엔지니어링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새만금사업 참여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새만금사업 복합개발 촉진 및 전북 지역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배경	새조성토지 공급 방식과 지역기업 우대 범위 확대를 통한 새만금사업 추진 기반 강화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청장이 선정한 민간사업자에 대한 조성토지 수의계약 공급 근거 신설 • 지역기업 우대 대상에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추가

- 「^②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지붕공사 시공자격 및 안전관리 강화
 - 지붕공사에서 지붕재 파손, 단부 추락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붕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기술능력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임. 이를 통해 소규모 지붕공사라도 등록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도록 하여 해당 공종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500만 원 이하 소규모 공사라 하더라도 지붕공사는 경미한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므로, 지붕 보수·설치 등 관련 공사의 시공자 선정 기준이 강화될 수 있음. 이에 따라 발주자와 원도급자는 지붕공사 수행 주체가 건설업 등록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외주 구매 및 현장 관리 부서는 시행 이후 입찰공고 또는 도급계약이 이루어지는 지붕공사에 대해 협력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와 해당 공종 수행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함. 다만 본 개정안은 특정 공종에 대한 시공자격 관리 강화 성격이 크므로, 전체 건설기업보다는 지붕공사·보수공사·시설 유지관리 공사를 수행하거나 발주하는 기업에 실무적 영향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됨.
- 본 개정령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지붕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입찰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이후 도급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되므로,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기업은 유예기간 동안 지붕공사 협력업체의 시공자격 확인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지붕공사의 경미한 건설공사 제외를 통한 시공자격 관리 및 고위험 공종 안전성 강화
배경	지붕재 파손 및 단부 추락 등 지붕공사 관련 사망사고 지속 발생에 따른 안전성 확보 필요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0만 원 이하 경미한 건설공사 제외 항목에 '지붕공사'를 신규 추가하여 법적 사각지대 해소 • 기술 능력 등 법적 요건을 완비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만이 지붕공사 시공 가능 • 개정령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입찰공고 또는 도급계약 체결 건부터 즉시 적용

• 「**③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관리 등에 관한 기준**」 : 기능등급 승급 요건 강화 및 숙련도 평가 도입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에 대한 현장 수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등급 승급을 위한 교육 및 숙련도 평가 수료요건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임. 이를 통해 기능등급 산정 시 총 환산 경력연수분 아니라 직종별 승급교육 및 숙련도 평가 수료 여부를 함께 반영하도록 하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제도의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개정안은 “승급요건”을 기능등급별 총 환산 경력연수와 승급교육 및 숙련도 평가 수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기능등급 승급을 위해서는 단순 경력 관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직종의 교육훈련 및 숙련도 평가 이수 여부를 함께 관리해야 하므로, 건설현장의 인력 등급 관리 부담이 확대될 수 있음.
- 노무 및 현장 관리 부서는 주요 투입 인력과 협력업체 소속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기능등급, 총 환산 경력연수,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여부, 승급교육 및 숙련도 평가 수료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8년 1월 1일부터 기능등급 세부 산정기준 개정사항이 적용되므로, 적용 시점 이전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현황과 향후 승급 가능 인력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실무 절차가 요구됨.

- 본 개정안은 고시 발령일부터 시행되며, 기능등급 세부 산정기준 관련 개정사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2027년 12월 31일까지 직종별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함에도 발급받지 않은 자는 2028년 1월 1일부터 발급받지 않은 직종에 대해 초급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총 환산 경력연수 및 승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또한 적용시기 이전에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의 해당 직종 기능등급은 유지되므로, 기존 등급 보유자와 신규·승급 대상자를 구분한 인력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단순 경력 중심에서 교육·숙련도 평가를 반영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관리체계로 전환
배경	기능등급 제도의 현장 수용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승급교육 및 숙련도 평가 수료요건 마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환산 경력연수와 승급교육·숙련도 평가 수료 기준을 연계한 승급요건 정의 신설 • 기능등급 승급 시 해당 직종별 승급교육 및 숙련도 평가 수료 필요 • 중급 기능등급 보유자의 고급 기능등급 조기 승급요건 마련

• 「^④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 사회적기업 우대 확대 및 입찰 기준 명확화

-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를 위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과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임.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 사회적기업 등의 경영상태 가산평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수의계약 대상에 사회적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2개 이상 지역에 걸친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가점 산정 방식과 PS항목 비중별 처리기준 등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적격심사 시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평가하는 적용 범위가 확대됨. 이에 따라 종합공사, 전문공사 및 기타 공사에서 사회적기업 등과의 공동수급 또는 참여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입찰 전략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음. 또한 소액수의계약 대상에 사회적기업이 추가되어, 지역소재 사회적기업의 조달청 시설공사 참여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음.
- 영업 및 수주 기획 부서는 입찰 대상 공사의 추정가격, 공종, 사회적기업 등의 시공비율 30% 이상 충족 여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록 여부 및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가점은 해당 항목의 점수를 공사현장 시·도 수로 나눈 점수로 산정하도록 명확화되므로, 지역업체 참여비율과 가점 산정 방식을 입찰 단계에서 함께 점검해야 함.
- 본 개정안은 2026년 6월 10일 행정예고되었으며, 의견제출기한은 2026년 6월 22일로 종료된 상태임. 이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검토하는 업체는 향후 확정 기준을 확인하면서, 사회적기업 추가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대상 확대, PS항목 비중별 처리기준 반영, 본청·지방청 사무분장 기준 정비 사항을 입찰·계약 실무에 반영할 준비가 필요함.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공공 시설공사에서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및 입찰·계약 행정기준 명확화
배경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와 다지역 현장, PS항목 등 시설공사 계약업무 기준 정비 필요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등 경영상태 가산평가 적용 범위 확대 • 종합공사 100억 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50억 원 미만까지 가산평가 확대 •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시공비율 30% 이상 시 경영상태 취득점수 10% 가산 • 소액수의계약 특례 대상에 사회적기업 추가 • 2개 이상 시·도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가점을 공사현장 시·도 수로 나누어 산정 • 다지역 공사 시 공사내역서 금액 비중이 큰 관할 지역의 소관청이 담당

3 전체 하위법령 개정 현황 : 시행 및 예고 법령 종합 요약

구분	하위 법령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시행령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개발사업 범위 규정 : 연면적 5천㎡ 이상 공동주택 등 건축사업, 복합 환승센터 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포함 • 부동산개발사업 보고사항 :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재무상황, 자금조달계획 및 분기별 추진현황 보고 절차 규정 마련 •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 운영 근거 : 사업계획, 추진현황, 사업성 평가 등에 관한 정보의 생산·관리 근거 규정 마련 •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 기능 규정 : 토지매매계약, 협약, 인가·허가 등의 내용에 관한 심의·조정 사항 명시 • 부동산개발사업 조정 절차 : 조정 신청 후 15일 이내 조정절차 개시 여부 결정, 조정절차 개시 후 60일 이내 조정안 작성 절차 규정 마련 	'26.5.28.
	「기계설비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 자격 범위 확대 : 기계설비기술자 국가기술자격에 설비보전산업기사 및 일반기계기사 2급 추가 • 초급 관리자 진입장벽 완화 : 기능사 자격 보유자 중 실무경력 6년 이상인 경우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등급 구분 및 조정 허용 • 교육 규제 완화 및 과정 신설 : 선임 시마다 이수하던 유지관리자 신규교육을 최초 선임 시 1회 이수로 완화하고, 유지관리교육 내 '등급조정교육' 신설 • 등급 조정 평가 기준 수립 : 자격·학력(30점), 실무경력(30점), 교육(40점) 종합평가를 통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조정 근거 명문화 	'26.6.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 9개 항목 상한액 하향(500만 원→300만 원) 및 관리비 목적 외 사용 시 위반 횟수·금액별 과태료(50만 원~1,000만 원) 차등 부과 규정 마련 • 관리규약 개정 절차 개선 : 입주자 개별 통지 대상을 '개정안 요약서'로 변경하고, 단지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개정안 공고 의무화 • 하자 보수 등록 구체화 :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사건번호, 발생 위치, 이행 방 	'26.6.2. (과태료 개정 규정은 '26.6.3.)

구분	하위 법령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법, 세부 보수 결과 등 상세 내역 포함 규정 신설 • 필로티 주차장 규제 완화 : 화재안전성능보강 목적의 마감재 설치 및 철거 작업을 기존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	
	「도로법 시행령」	• 안전시설 관련 조문 정비 : 도로안전시설 범위에 '방호울타리'를 포함하는 규정이 상위 법률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조문 삭제 및 정비 • 지하차도 통행 제한 근거 신설 :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의 침수 깊이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도로관리청이 차량 통행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명문화	'26.5.6. (안전시설 정비 규정은 '26.6.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화단지 지정 주체 확대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권한을 기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직접 지정 가능 • 지정 요건 구체화 : 인접 시·도 스마트도시산업 연계 혁신거점, 연구개발 여건 양호, 혁신기술 실증 지원 기반 구축 등 지정 요건 신설 •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가 특화단지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규정 • 위원회 심의 절차 확립 : 특화단지의 지정, 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 시 반드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행정 절차 정비	'26.6.3.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범위 명확화 : 플랫폼 구축·운영 시 수집 및 관리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집한 부동산 관련 정보 및 지도 등 공간정보로 구체화 • 관계 기관 데이터 연계 및 협조 근거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에 보유 데이터의 연계·활용·제공 및 송수신 관련 기술적·제도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실태조사 사전 통지 절차 개선 : 실태조사 시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통지하도록 행정 절차 보완	'26.6.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발주청 조정 대상 공사 추가 :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건설공사에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추가 • 재해복구계획 관련 근거 신설 :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67조제2항제2호의2로 신설	'26.6.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상한 폐지 : 포상금 지급대상을 '입증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서 '불공정행위 사실을 신고한 자'로 확대하고, 기존 지급상한 200만 원 폐지 •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 상향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을 하도급한 경우 참여제한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강화 • 불법 재하도급 참여제한 기준 강화 :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1년 또는 2년, 미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10개월 또는 1년 8개월, 해당 업종 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8개월 또는 1년 4개월 적용 • 영업정지기간 기준 상향 :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등 위반 유형별 영업정지기간을 8개월·10개월·1년 등으로 강화	'26.6.23.

구분	하위 법령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 도급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유형별로 도급금액의 24%·27%·30% 수준의 과징금 부과 기준 적용 명단 공표 세부사항 위임 근거 신설 : 명단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주택법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원 총원 자격 기준일 완화 : 주택조합 조합원 결원 발생으로 총원 시, 자격 요건 판단 기준일을 기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서 '해당 조합 가입 신청일'로 변경 주택조합사업 지연 방지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신규 전입자 등도 조합원으로 총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총원 대상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방지 조합원 자격 요건 문구 명확화 :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상실한" 부분을 "상실했다가 재취득한"으로 수정하여 행정적 기준 명확화 	'26.6.2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 확대 : 새만금사업지역의 복합적 개발 및 도시기능 증진을 위해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지역기업 우대 대상 추가 : 지역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도 전복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입법예고 중 ('26.6.15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공사의 경미한 건설공사 제외 : 추락 및 지붕재 파손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예정금액 1,5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건설공사' 범위에서 지붕공사를 제외 건설사업자 시공 의무화 : 지붕공사는 반드시 기술능력 등 법적 요건을 갖추고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장 안전성 강화 	입법예고 중 ('26.6.23 공고)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내용 정비 :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배치 및 이동계획 등 현장 안전관리 필요 사항을 반영 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대상 반영 :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포함하고, 설치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주기 규정 성능검사 교육내용 추가 :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성능검사 업무 담당자 교육내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관련 사항 추가 배치전건강진단 면제 사유 완화 :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 이상인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 등을 받은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배치전건강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비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기준 강화 : 건강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인원은 1만 명 이하,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합산 인원은 1만3천 명 이하가 되도록 기준 신설 	'24.7.1. (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관련 규정은 '26.6.26.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성평가 방법·절차·시기 구체화 :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위험성 수준 결정 →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이행 순으로 위험성평가 절차를 명시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명확화 : 최초평가는 작업 시작 전까지, 정기평가는 매 	'26.6.1.

구분	하위 법령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p>년 1회 이상, 수시평가는 추가 유해·위험 요인 발생 우려 또는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하도록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참여 및 공유 절차 신설 : 사업장 순회 점검을 원칙으로 근로자를 위험성평가에 참여시키고, 설문조사·면담 등 의견수렴 방법 병행 가능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신설 : 실시 시기·담당자, 참여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및 이행 결과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재해 원인조사 대상 확대 : 기존 중대재해 중심에서 화재·폭발, 붕괴, 추락, 질식·중독, 화학물질 누출, 폭염작업 등으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산업재해까지 원인조사 대상 확대 • 재해조사보고서 작성·공개 근거 마련 : 재해발생 사업장 개요, 재해 경위, 발생 원인, 예방 권고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조정교육 교육비 신설 :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 교육과정에 등급조정교육을 반영하고, 교육비 15만 5천 원 기준 마련 • 유지관리교육 서식 정비 : 유지관리교육 신청서 및 수료증의 교육과정란을 신규교육·보수교육·등급조정교육으로 정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인정기간 연장 : 기존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기간을 2026년 4월 17일에서 2027년 4월 17일로 연장 • 신고·확인 서식 처리기간 조정 : 별지 제9호의7서식 및 제9호의8서식의 처리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변경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정보 항목 정비 : 관리주체 관련 기재사항을 정비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수첩발급번호 기재 항목 반영 	'26.6.1.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구간 규정 : 급커브·급경사 등 도로 구조적 이탈 위험 구간, 보행자 사고 위험 구간, 보행자 통행 빈번 시설 인접 구간 등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보행자 안전시설 종류 명시 :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안전표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으로 설치 대상 시설 종류 구체화 • 안전시설 설치 기준 수립 : 차량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성능 확보, 차량의 보도침범 및 보행자 추락 위험 방지, 보도 유효폭 및 통행 동선을 고려한 설치 기준 마련 	'26.6.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공사 추가 : 지방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설공사에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추가 • 재해복구계획 관련 근거 신설 :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3조제4호의2로 신설 	'26.6.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 신설 :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포함됐던 우선공급 제도를 개편하여, 국민주택(15%) 및 민영주택(10%) 대상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 신설 	'26.6.15.

구 분	하위 법령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신설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공급하는 특별공급 유형 마련 도심융합특구 특별공급 근거 마련 :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 기업, 신설 교육·의료기관 및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 신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 설치 :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적정성 검토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내 위원회 설치 근거 명문화 이전기관 이주직원 주택공급 특례 :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도 관련 기관 및 기업 이주직원 대상 주택 공급 시, 건본주택 건축기준 등 일부 규정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듈러형 주택 공급 근거 마련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공장 등에서 미리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모듈러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국민·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확대 : 재개발사업으로 철거 예정인 주택의 소유자(분양권 포기자) 및 중대한 하자로 철거가 필요한 주택의 소유자를 우선 공급 대상에 추가 행복주택 재계약 요건 완화 :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으로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재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신설 :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청년' 및 '신생아 가구' 대상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고 세부 입주·선정 기준 수립 	'26.6.22.
	「주택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소유 판단 기준 명확화 : 조합원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자격기준을 기존 '당첨자의 지위'에서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변경하여 행정적 기준 명확화 상속 등 주택 취득 시 처분 기한 연장 :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주택 처분 유예 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전매제한 주택 취득 시 예외 규정 신설 : 1주택 소유 세대가 상속·유증·혼인으로 전매제한 주택(85㎡ 이하)을 취득한 경우, 부적격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 시 조합원 자격 유지 허용 	'26.6.23.
행정 규칙	훈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지급대상을 '불공정행위 사실과 입증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서 '불공정행위 사실을 신고한 자'로 확대 포상금 심사 고려사항 추가 :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심사 시 불공정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 처분결과 고려 근거 신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개편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의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신고에 대해 과징금 부과액의 30%, 그 외의 경우 1,000만 원 지급 기준 마련 기타 불공정행위 포상금 기준 유지 : 불공정 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부당특약 요구 등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해 200만 원 지급 최대금액 적용 	'26.6.24.

구분	하위 법령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상금 지급금액 산정 기준 정비 :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신고처리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 결정 평가기관 지정 신청 절차 규정 :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담조직도, 전문능력 증빙서류, 협력체계 계약서류(복수 법인 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 평가기관 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 평가기관의 지정 및 취소 심의를 위해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 여부를 의결하도록 규정 결격사유 발생 시 지정 취소 절차 : 법령상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하며, 취소 사실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행정 절차를 명확화 	'26.5.28.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낙찰하한율 2%p 인상 반영 : 공공계약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범정부 추진사항에 맞추어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기준 개정 입찰가격 평점 기준 조정 : 고시금액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예정가격의 90.25% 이상인 경우 입찰가격 평점 65점 적용, 고시금액 이상 10억 원 미만은 92.5% 이상인 경우 25점 적용 10억 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 가격 기준 정비 :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은 예정가격의 95% 이상인 경우 입찰가격 평점 10점, 30억 원 이상은 97.5% 이상인 경우 5점 적용 적격심사 배점체계 유지 : 고시금액 미만은 사업수행능력 30점·입찰가격 70점, 고시금액 이상 10억 원 미만은 사업수행능력 70점·입찰가격 30점, 10억 원 이상은 사업수행능력 80점·입찰가격 20점 기준 적용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과잉제재 해소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에도 감점을 적용받는 현행 규정 정비를 통한 형평성 확보 고시금액 미만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정비 : 참여기술인 50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또는 경영상태 34점, 업무중복도 12점, 신용도 4점 기준 적용 	'26.6.5.
	「광역시계획수립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예외 신설 :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을 '해제가능 총량'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6.6.9.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 예타 관련 규정 정비 :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조문 정비 및 일부 조항 삭제 지역균형성장 평가체계 개편 : 기존 '지역균형발전' 중심 평가를 '지역균형성장' 분석으로 정비하고, 지역낙후도와 균형성장효과 중심의 평가체계 마련 인구감소지역 가중치 조정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건설사업의 지역균형성장 가중치 상향(5%p) 및 경제성 가중치 하향(△5%p) 수도권 지역균형성장 가중치 도입 : 수도권 유형 건설사업에도 지역균형성장 가중치 0~5% 범위 적용 정책성 평가항목 개편 : 정책효과 항목을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파급효과 중심으로 정비하고, 사업추진 여건 및 사업별도평가항목과 함께 평가 	'26.5.29.

구분	하위 법령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 사업 조사방식 개편 : 정보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원칙적으로 6개월로 단축하고, 기술사회 환경분석·사업설계 적정성·비용-효과성 기반 종합평점 체계 도입 • 위원회 명칭 변경 :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재정투자평가위원회'로 변경 • 예타 미선정 사유 통보 근거 신설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선정기준에 따른 사유 통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예타 관련 규정 정비 :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종합평가 및 보고서 수록사항 정비 • 지역균형성장 평가체계 개편 : 기존 정량지표 중심의 '균형발전효과'를 정량·정성지표를 종합 고려하는 '균형성장효과'로 개편 • 지역균형 가중치 조정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균형성장 가중치 상향 및 경제성 가중치 하향, 수도권 지역균형성장 가중치 5% 이내 도입 • 정책성 평가항목 개편 : 정책효과 항목을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파급효과 중심으로 정비하고, 사업추진 여건 및 별도평가항목 체계 명확화 • 정보화 사업 평가방식 전환 : 정보화 사업을 AHP 평가방식에서 기술사회 환경분석·사업설계 적정성·비용-효과성 기반 종합평점 체계로 전환 • 종합평가 기준 정비 : 복지·소득이전 사업 및 정보화 사업의 영역별 100점 평가, 종합평점 산출 및 평가결과 도출 기준 마련 •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용어 정비 :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재정투자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문화재기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용어 수정 	'26.5.29.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로커·입찰견적대행사 정의 신설 : 입찰·낙찰·계약체결 과정에 개입하여 이익을 얻거나 얻게 하는 자를 '브로커'로, 시설공사 내역입찰에서 산출내역서 작성을 지원·제공하는 자를 '입찰견적대행사'로 규정 •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구체화 : 다수 입찰자의 입찰가격 사전 모의·조율을 통한 균형가격 조작, 입찰가격 공유 중개, 동일·유사 내역서 배포를 통한 담합 유도, 성공보수 요구·수수 등 금지행위 명시 • 입찰자·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 신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브로커·입찰견적대행사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않도록 규정 • 불공정행위 제재 근거 마련 : 브로커·입찰견적대행사 및 이에 관련한 입찰자·계약상대자에 대해 형사고발 가능, 처벌 결과에 따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26.5.29.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선금 제도 개편 : 기존 계약금액의 100%까지 가능했던 선금 지급 한도를 70%로 조정(상한 삭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용계좌 사용 및 수령 선택권 보장, 계약 해지 기준 신설 등 관리 강화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현행화 : 2026년도 기준단가를 반영하여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현행화 •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제한입찰이 가능한 종합공사 한도 금액을 기존 100억 원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 	'26.6.2.

구분	하위 법령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고시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원인조사 기준 및 절차 마련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중대재해 등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관계전문가가 사업주의 법령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재해조사보고서 매월 공개 의무화 : 조사 완료 후 지체 없이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의견 청취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월 대국민 공개하도록 절차 수립 공개 심의위원회 신설 및 운영 : 보고서 내 비공개 정보(영업상 비밀, 개인정보 등) 포함 여부 및 공개 범위를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에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26.6.1.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화단지 지정 체계 개편 :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직접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주체 확대 및 요건 명확화 시행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신설 :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공청회 개최 등 구체적인 행정 절차 마련 위원회 심의 의무화 : 특화단지 지정 및 변경·해제 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되, 면적 10% 미만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제외 지정 공고 및 관리 강화 : 지정·변경·해제 사실의 관보/공보 공고 의무화 및 운영협의회 운영 실적 보고 등 관리 기전 정비 	'26.6.3.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고시 :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표준시설비용 1㎡당 82,000원 설정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제시 : 도로 1㎡당 175,000원, 공원 1㎡당 106,000원, 녹지 1㎡당 88,000원 적용 상·하수관로 표준조성비 제시 : 상수관로 관경별 1m당 45,000원~283,000원, 하수관로 관경별 1m당 136,000원~467,000원 적용 	'26.6.10.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 수탁기관 확대 : 인공지능 스마트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실증하기 위한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의 신속·효과적 조성을 위해 계획수립 등 지원업무 수탁기관 확대 수탁기관 추가 : 기존 수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더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스마트도시협회 추가 위탁업무 범위 명시 : 법 제27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 계획수립 등 지원 업무 규정 	'26.6.5.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소개사업자 선지급 임금 지급근거 신설 :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선지급한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선지급 임금상당액의 지급대상을 해당 직업소개사업자로 변경하여 청구 가능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수령 근거 마련 :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선지급하고 해당 임금을 건설사로부터 후수령하는 경우, 선지급 임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직업소개사업자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6.6.19.

구분	하위 법령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서류 5종 명시 : ①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② 선지급한 임금내역, ③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확인서, ④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 ⑤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증 또는 등록증 및 통장사본 제출 • 무료직업소개사업자 제출서류 예외 : 무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 제4호 서류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 관련 서류 제외 • 공사대금 지급절차 정비 :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선지급 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7조제7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한 뒤 직업소개사업자 계좌로 지급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관리 등에 관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등급 승급요건 신설 : 기능등급별 총 환산 경력연수와 함께 승급교육 및 숙련도 평가 수수료 기준을 충족해야 승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 • 승급교육·숙련도 평가 수수료 의무화 : 기능등급 승급을 위해 해당 직종별로 [별표 3]에서 정한 승급교육 및 숙련도 평가를 수수료하도록 정비 • 기능등급 산정기준 정비 : 기능등급은 총 환산 경력연수와 승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여하도록 명확화 • 고급 기능등급 조기 승급 근거 마련 : 중급 기능등급 보유자는 고급 등급의 총 환산 경력연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조기 승급요건을 충족하면 고급으로 승급 가능하도록 규정 • 기존 기능등급 유지 경과조치 : 개정 기준 적용 전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의 해당 직종 기능등급은 유지하되, 이후 승급 시에는 개정된 세부 산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 	행정예고 중 (‘26.6.18 공고)
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 시설공사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시 여성기업·장애인기업과 함께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산평가 범위 확대 • 가산평가 적용 범위 확대 : 사회적기업 등 가산평가 대상을 종합공사는 100억 원 미만, 전문·기타공사는 5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 • 경영상태 가산평가 기준 정비 :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 가산평가하도록 규정 정비 • 2개 이상 공사현장 지역업체 참여가점 명확화 : 공사현장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기존 ‘해당항목의 1/2’ 방식에서 공사현장 시·도 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조문 명확화 • 소액수의계약 대상 확대 : 기존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중심의 소액수의계약 대상에 사회적기업 추가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처리기준 반영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른 PS항목 비중별 처리기준을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반영 • 본청·지방청 사무분장 명확화 : 공사현장이 2개 이상 소관청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공사내역서상 금액 비중이 큰 관할 지역의 소관청이 담당하도록 업무구분 명확화 	행정예고 중 (‘26.6.10 공고)